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학점은행제」 운영 규정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학점은행제라 함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하며, 학위취득까지도 가능케 하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학습과정으로 법령 및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②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위한 계획 및 평가인정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③평가인정된 학습과정의 사후관리를 위한 재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 ④학점은행제 관련 정보관리, 상담, 홍보
- ⑤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교수 및 강사

제6조 (교수 및 강사 등) ①관장은 교수 및 강사선정 시 고등교육기관 등 학점은행제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②관장은 학점은행 책임교수제를 운영하여 학습의 질을 관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의무) 교수 및 강사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평생학습관의 운영규정에 따른 학습자 지도·관리
- ②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연수 참여
- ③강의 목표 달성 및 학습자의 학점취득을 위한 노력
- ④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강의시간 변경 또는 휴강 금지
- ⑤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자료에 대한 매매, 알선 및 일체의 금품수수 금지
- ⑥학습자를 대상으로 종교나 정치적인 발언 금지

제8조 (강사료 지급) 강사료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9조 (강의평가) 개설된 과목의 수강 종료 시, 종강일로부터 1주일내에 강의평가(만족도조사, 출석률, 학습성과 등)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교·강사에게 통보하고 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활용한다.

제3장 학사일반

제10조 (수강신청 자격) ①수강신청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수강신청 자격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2. 그 외 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 (학습자 모집 등) ①학습자 모집은 온라인 선착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 학습자는 사전에 방문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②「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은 국립국어원에서 정하는 1, 3영역의 8과목(24학점)을 사전 이수한 학습자로 한다.

③ 삭제

제12조 (수강과목 수 제한) 1인당 수강과목의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학습비 감면은 2개 과목까지만 가능하다.

제13조 (개강) 각 학습과목별 모집정원의 70% 이상 수강신청 한 과목에 한하여 개강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 (휴·보강) ① 평생학습관 및 교·강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적 인원 7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교·강사는 휴강을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휴·보강계획서를 휴강일 7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학점인정 및 수업) ①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기간은 이수 학습과정당 4주 이상으로 하며,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실험·실습·실기 등의 경우에는 30시간)이상으로 한다.

②수업은 평생학습관의 강의실 및 시설을 사용한다. 단, 한국어실습과목에 한해 다른 기관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③관장은 교육과정 외에 학습자들의 교육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지식습득을 위해 전문가 특강, 공개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④휴업일은 평생학습관 휴관일에 따른다.

제16조 (시험 및 평가) ①삭제

②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구분하여 출석시험으로 실시하며, 수시시험은 정기시험 외에 학습과정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과제물 평가 등을 포함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시험 미 응시자에 대해서는 성적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제16조2의 제3항의 공결의 경우에는 시험 과제물로 평가를 대신하거나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추가 시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

④학습과목의 평가는 정기·수시시험 80%, 출석 20%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다만, 출석을 10% 반영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과목은 그에 따른다.

⑤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등급	평점	점수
A+	4.5	95~100
A0	4.0	90~94
B+	3.5	85~89
B0	3.0	80~84
C+	2.5	75~79
C0	2.0	70~74
D+	1.5	65~69
D0	1.0	60~64
F		60점 미만

⑥삭제

⑦삭제

제16조의2 (출석관리) ① 학습과정별 담당 교·강사는 학습자의 매시간 단위 출결사항을 학습과정별 출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지각 3회와 조퇴 3회는 각각 결석 1회로 환산하며, 수업 중 수업담당 교·강사의 허가 없이 이석하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습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결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기타 관장이 공결로 인정하는 경우

④출석률이 총 수업시간의 5분의 4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을 “F”로 처리한다.

⑤출석성적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부여한다.

출석률	점수	출석률	점수
100%	20(10)	85%이상~90%미만	14~15 (7~7.5)
95%이상~100%미만	18~19 (9~9.5)	80%이상~85%미만	12~13 (6~6.5)
90%이상~95%미만	16~17 (8~8.5)	80%미만	F

제16조의3 (학습과정 이수) ① 학습과정별 성적이 D°등급 이상,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의 5분의 4이상일 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이미 이수한 학습과정은 재이수할 수 있으나, 재이수하여 학점인정 신청시 이미 취득한 학점은 무효로 한다.

③ 법률에 따라 인정된 학점이라도 오류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 학점을 취소한다.

제16조의4(부정행위 조치)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학습자에게는 성적을 부여하지 않는다.

1. 학습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대리출석

2. 시험 중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시험시간 동안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보는 행위

라. 시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마. 그 밖의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감독관이 판단하는 행위

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사.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아. 부정한 자료를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자. 학습자간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꿔 답안지를 작성, 제출하는 행위

차.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기타 성적에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

제17조 (수업제한) 관장은 학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업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리출석, 무단지각 또는 조퇴 등 지속적으로 학습에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

2. 평생학습관의 명예를 사회적으로 실추시키는 경우

3. 교과목 운영 및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4장 수강료 등 관리

제18조 (수강료 징수) 수강료는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제2항에 의거하여 징수한다.

제19조 (수강료 등 납부) ①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료를 평생학습관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관장은 학습과정별 학습비 및 실험·실습·실기비 이외의 금액을 징수할 수 없다.

제20조 (수강료 감면 및 반환) ①수강료 감면은 조례 제7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2.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3.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대학수업료등면제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4.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시설보호대상자증명서
- 5.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③수강료 반환은 조례 8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제3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장 기 타

제2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2.29.부터 시행한다.

휴 · 보강 계획서

구 분	학점은행제	결재	담당자	팀장	부장	관장
학습과목						
강 사 명		연락처				
휴 강 일	월 일 요일(시 ~ 시, 총 시간)					
휴강 사유						
보강 일시	월 일 요일(시 ~ 시, 총 시간)					
보강 장소						
비고						

붙임 : 휴·보강 사유 관련 증빙서류 1부.

위와 같이 휴 · 보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장 귀하

휴 · 보강 동의 연명부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수강료 감면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주소	(☎)		
강좌명				
감면사유 ※ 만65세 이상인 자는 신청서 제출 제외		감면비율	해당여부	증빙서류(신분증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0%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100%		국가유공자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100%		시설보호대상자증명서
장애인 1급 ~ 3급		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장애인 4급 ~ 6급		50%		
다문화가정의 본인, 배우자, 자녀		100%		가족관계증명서
셋째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모 (개강일 기준 자녀 나이 만 15세 이하)		100%		주민등록 등본
새터민(북한이탈주민)		100%		북한이탈주민증명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수강료 감면적용 및 공지사항 전달 등을 위해 5년(보유·이용기간)동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감면 미지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담당자 (서명)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장 귀하				
※ 증빙서류는 감면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공 결 승 인 신 청 서

구분	학점은행제		담당자	팀장	부장	관장
학습과목		결재				
성명						
신청자 연락처		담당 교·강사				
○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신청사유 :						

붙임 : 공결사유 증빙서류 1부.

위와 같이 공결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장 귀하